

수원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정정 고시

수원시 고시 제2009-226호(2009.07.03.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2009.10.28.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, 수원시 고시 제2021-99호(2021.03.31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3-204호(2023.05.12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수원시 고시 제2023-502호(2023.10.18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된,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-6번지 일원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한 수원시 고시 제2023-557호(2023.11.30.) 내용에 아래와 같은 정정사항이 있어 내용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3. 12. 4.

수 원 시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-6번지 일원
3. 정비구역의 면적 : 28,863.00㎡
4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
 - 가. 명칭 :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지수)
 - 나. 사무실소재지 : **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71, 3층(영화동37-113)**(☎ 031-253-1552)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(변경)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21. 3. 25. (변경 인가일 : 2023. 11. 30.)
7. 변경의 사유 및 내용
 - 1) 변경의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

2) 변경의 내용

(1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
기존	사업시행인가일(2021년 3월 25일) ~ 31개월 9일(2023년 10월 19일)	
변경	사업시행변경인가일(2023년 11월 30일) ~ 72개월	

(2)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
별첨

8. 기타 관계도서 : 생 략

수원시청 도시정비과(재개발팀 Tel: 031-228-3393) 및 111-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조합(Tel: 031-253-1552)에 사업시행(변경)인가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소관부서	도시정비과	담당자 직/성명	주무관 이재환	전화번호	031-228-3393
------	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